

# 검토보고서

양주시의회  
전문위원 김형열

#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□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

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 
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

## □ 본조례 개정 이유는

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급수설비 설치기준등  
달라지는 사항의 반영과 전용공업용수의 공급  
요금단가를 기업경영 지원을 위하여 인하하기  
위함입니다

## □ 주요 내용은

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

## □ 본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

○ 본 조례안 전체적으로 최근에 수도법이 개정 되면서  
급수시설의 용어를 현실 개념에 적합도록 정립한  
사항을 적용하였으며

- 안 제6조에서 동일 건물에서 용도별로 계량급수를 분리 설비할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므로서 수도 용도별 요금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요금을 산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
- 안 제20조에서 수도 사용량을 검침할수 있는 계량기의 설치위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서 공급자와 요금 납부자간에 검침이 공정하고 관리가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
- 안 제41조에서 그동안 누수에 의한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에 따른 요금 감면기준을 급수관의 노후등 사용자가 확인이 불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급수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거나, 내외벽안에 부분이므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달리 정하므로서 사용자의 입장 을 반영하였습니다
- 안 제48조에서 그동안 수도 계량기의 검침·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위탁할수 있는 대상을 법인으로 하였으나 금번 개정시에 민간인 까지 추가

함으로서 주부 검침원등을 모집하여 활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

이것은 주부등 유휴 노동력에게 일자리 제공등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

- 본 조례안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서 “전용공업 용수를 톤당 513원에서 448원으로 인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

그동안 검준공업단지등의 공업용수를 광백저수지 용수를 공급함에 있어 용수 단가가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월등히 높다하여, 기업의 생산원가가 증가하여 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여론이 많았으나 12.6%로 대폭적으로 인하 하였으므로 기업에 상당한 지원 효과가 있을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